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6
----------	-----

2022. 11. 30.(수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10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11월 23일

-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조덕진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정)과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,
- 조례에서 잘못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올바르게 변경하는 한편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전체 조문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조례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별로 “장”으로 구분·신설(안 제1장부터 제5장까지)
- 조례에서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 및 조항을 올바르게 변경(안 제2조제5호, 제4조, 제11조제1항, 제14조제3항 및 제15조)
-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대한 의견제출과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신설(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, 별지 제3·4호서식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(안 제11조, 별지 제1·2호서식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대진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을 통해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제출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한정)과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전체 조문의 수가 30조로 늘어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5개의 장으로 나누는 개정안은 적절해 보임.
-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조항은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위임한 주민의 규칙 제·개정과 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,
 - 안 제24조는 주민이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25조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으로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,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,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26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.
- 안 제27조는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28조는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음.
- 안 제29조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음.
- 안 제30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기존 조례에서는 주민이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근거 규정이 미비했는데, 개정안을 통해 도민이 적극적으로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자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앞에 “제1장 총칙”을 신설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”으로, “의하여 설치된 기금”을 “따라 설치된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세입,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”을 “세입 및”으로 한다.

제4조 앞에 “제2장 입법예고”를 신설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또는 「법제업무운영규정」에 의하여”를 “또는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 앞에 “제3장 비용추계”를 신설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별지 제1호 서식”을 “별지 제1호서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”을 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”를 “법 제19조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132조”를 “법 제148조”로 한다.

제16조 앞에 “제4장 입법안 심사, 자치법규 공포 및 정비”를 신설한다.

제23조의 제목 “(개정 의견 제안)”을 “(입법 의견 제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내용에 대한 개정”을 “정비에 관한”으로, “제안”을 “제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개정”을 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 제24조 앞에 “제5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제출”을 신설한다.

제24조의 제목 “(시행규칙)”을 “(규칙의 제정 등 의견제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(이하 “의견제출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.

제25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(의견제출 제외 대상)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
2.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

3.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

제26조(의견제출 방법)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(전자문서를 포함하며, 이하 “의견제출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.

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.

제27조(의견제출 검토 등) ①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과 관련된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과 관련이 있는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부서를 지정하게 할 수 있다.

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(제2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, 이하 “의견제출인”이라 한다)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,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.

⑤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협조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28조(의견의 반영) 도지사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.

제29조(차별대우의 금지 등)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30조(비밀 준수의 의무 등)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아니 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해야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충청북도 ○○○ 조례안 비용추계서(제11조제1항 관련)

1. 사업개요

-
-
-

2. 비용 발생 요인

3. 관련조문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나. 추계 결과

다. 재원조달방안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△△국 △△ 과장 ○○○

(전문기관 : △△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○○○)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년)	2차년도 (년)	3차년도 (년)	4차년도 (년)	5차년도 (년)	계
세 입						
△△△△ △△△△ △△△△						
세 출						
△△△△ △△△△ △△△△						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지방세					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 △△특별회계						
구·군비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(제11조제4항 관련)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○ 사 유

○ 작성자

△△국 △△ 과장 ○○○

(전문기관 : △△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○○○)

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제출서(제26조제1항 관련)

의견제출인 ※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,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	성명	[] 대표자 ※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√ 표시	
	주소		
	전화번호		
	전자우편		
공동 의견제출	[] 해당	[] 해당되지 않음	대표자 인원 : 명
의견 ※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			
참고자료 ※ 필요한 경우 제출,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			

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 및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충청북도지사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검토결과서(제27조제5항 관련)

의견제출인	성명 주소 제출일자
제출의견	
주관부서 및 검토자	부서명 담당자 연락처
규칙명	(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)
관련 법령 및 조례	
검토의견 ※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	(수용 여부 및 사유 등 작성)

「지방자치법」 제20조 및 「충청북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27조제5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에 관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충청북도지사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“세출”이란 일반회계·특별회계의 세출,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.</p> <p>6. “세입”이란 일반회계·특별회계의 세입,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4조(입법예고)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입안절차를 거치는 때에는 「행정절차법」 또는 「법제업무운영규정」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1장 총칙</u>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--- 「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」 ----- 따라 설치된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----- -----.</p> <p>6. ----- ----- 세입 및 ----- ----- 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2장 입법예고</u></p> <p>제4조(입법예고) ----- ----- ----- 또는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에 따라 ----- -----.</p>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①
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
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
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,
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
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
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·첨부
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
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도
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
·첨부하여야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
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. 다만,
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
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
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·2. (생략)

제14조(작성부서 및 제출시기) ①
· ② (생략)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
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소관 부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3장 비용추계

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 ①

----- 별지
제1호서식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「지방자치법」 (이하 “법”이
라 한다) 제19조-----

-----.

④ -----

-----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작성부서 및 제출시기) ①
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19조-----

서에서 비용추계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 조례·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) 충청북도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 되도록 협조한다.

<신 설>

제23조(개정 의견 제안)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내용에 대한 개정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개정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도의 정책

-----.

제15조(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)

-- 법 제148조-----

-----.

제4장 입법안 심사, 자치법규 공포 및 정비

제23조(입법 의견 제출) ① -----
----- 정비에 관한 -----
----- 제출-----
-----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-----

-----.

③ ----- 따라 -----

결정·재정증대 등 도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제5장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
의견제출

제24조(규칙의 제정 등 의견제출)

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(이하 “의견제출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.

제25조(의견제출 제외 대상) 법

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
2.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
3.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

<신 설>

제26조(의견제출 방법)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(전자문서를 포함하며, 이하 “의견제출서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.

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.

<신 설>

제27조(의견제출 검토 등) ①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과 관련된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과 관련이 있는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부서를 지정하게 할 수 있다.

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(제2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, 이하 “의견제출인”이라 한다)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,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.

⑤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협조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제28조(의견의 반영) 도지사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

<신 설>

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칙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29조(차별대우의 금지 등) 도지사
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30조(비밀 준수의 의무 등) 이
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 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해야 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9조(조례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청구)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·청구대상·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20조(규칙의 제정과 개정·폐지 의견 제출)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(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)의 제정,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,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48조(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)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